

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철도시설의 역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역 시설은 침수의 예방과 비상 시 신속한 배수를 목표로 침수방지시설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(안 제6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별첨)

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

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(침수방지 및 배수시설) 역 시설은 침수의 예방과 비상 시 신속한 배수를 목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예상 침수 높이는 '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(행정안전부)'에 따라 결정할 것
2. 외부출입구는 폭우 시 노면수가 개구부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보도면보다 높게 설치할 것
3. 지하상가나 인접한 대형 건물과의 연결통로 설치 시 침수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침수대비책을 수립할 것
4. 환기구 및 채광용창은 지상개구부로 빗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
5. 지상 엘리베이터 출입구 주변은 지상면의 경사를 조정하여 빗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며, 전면 입구에 긴급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반영할 것
6. 집수정은 지상의 침수발생 시에도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배수시설 계획과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한 우수의 역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계획을 수립할 것
7. 배수량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, 노출 급·배수관은 겨울철 동파가 되지 아니할 것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3조(역 시설) 역 시설은 <u>폭우, 강풍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침수방지설비 및 배수량에 따른 배수설비를 갖추는 것</u> 2. <u>비가 올 때 빗물이 지하 역사 내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출입구 부분을 접속되는 지면보다 충분히 높게 시공할 것</u> 3. <u>환기구 등을 통해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아니할 것</u> 4. <u>노출 급·배수관은 겨울철 동파가 되지 아니할 것</u> 	<p>제63조(침수방지 및 배수시설) 역 시설은 <u>침수의 예방과 비상 시 신속한 배수를 목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예상 침수 높이는 ‘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(행정안전부)’에 따라 결정할 것</u> 2. <u>외부출입구는 폭우 시 노면수가 개구부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보도면보다 높게 설치할 것</u> 3. <u>지하상가나 인접한 대형 건물과의 연결통로 설치 시 침수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침수대비책을 수립할 것</u> 4. <u>환기구 및 채광용창은 지상개구부로 빗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</u> 5. <u>지상 엘리베이터 출입구 주변은 지상면의 경사를 조정하여 빗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며, 전면 입구에 긴급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반영할 것</u> 6. <u>집수정은 지상의 침수발생 시에도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배수 시설계획과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한 우수의 역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계획을 수립할 것</u> 7. <u>배수량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, 노출 급·배수관은 겨울철 동파가 되지 아니할 것</u>